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1189
----------	------

제출년월일 : 2010. 10.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활성화 등 시 차원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의 녹색성장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성장추진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되, 처음 계획수립은 정부계획에 맞추 2011년~2013년 까지로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8조~제9조)
- 녹색성장 주요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제18조)
-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녹색경제를 촉진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도록 함 (안 제19조~제23조)
- 시민과 기업의 녹색생활 촉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녹실천운동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4조~제25조)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4. 기타 참고자료 : 붙임

- 붙임 : 가.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나. 기타참고자료(관계 법령)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슬로공동체”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살리기 운동을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시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6.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시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충청북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충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대상기관은 시 본청, 사업소 등 추진계획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성장 추진체계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2/1을 초과할 수 없다.
 - 1. 시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 2. 시의회 의원
 - 3.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 학식과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 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 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 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시군연계협력, 기업고충 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5 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5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녹색성장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거나 위원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20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23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4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촉진

제25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 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계획의 수립)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추진계획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2010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관계법령

1.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

제4조(자치단체의 책무) ① 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은 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근 시·군과의 발전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11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되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한다.